#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42

발의연월일: 2024. 9. 20.

발 의 자: 강선영·김상훈·유영하

고동진 · 강대식 · 박준태

최수진 • 이헌승 • 나경원

김용태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금지·제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드론, 동력 및 무동력 비행체 등의 비행이 증가하면서 드론 등이 군용항공기의 운항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등 군사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드론, 초경량비행 장치 및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용항 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1항제1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드론(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말한다), 초경량비행장치(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)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

제24조제4항 중 "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"를 "제9조제1항제4호, 제5호 또는 제13호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	제9조(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
제한)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	제한) ①
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	
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호, 제3	<u>-</u>
호, 제7호, 제8호, 제11호 또는	
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	
장등(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	
부대장을 포함한다)의 허가를	
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	
아니하다.	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3.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
	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드
	론(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
	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
	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말
	한다), 초경량비행장치(「항공
	안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
	장치를 말한다) 또는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무동력비행장
	치 등의 비행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벌칙) ① ~ ③ (생 략)	제24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
	같음)
④ <u>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</u>	④ <u>제9조제1항제4호</u> , 제5호 또
<u>호</u> 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	는 제13호
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	
금에 처한다.	
⑤ ~ ⑧ (생 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